

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3. 4. 24(수)

건설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문희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3년 4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4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4월 16일

(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 문 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를 완화하여 대원의 부담을 경감하고,
-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완화 (안 제14조)
-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 보장 (안 제31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문 홍 열)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의용소방대원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방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 시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 및 출동(동원)에 불참할 경우 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자원자 부족 및 대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동(동원)에 불참한 경우를 해임사유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,
-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시·도연합회장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의 안전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인 「소방기본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시·도 및 시·읍·면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,
-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는 자원자로 구성하되, 설치 및 운영 등은 시·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- 입법예고(“13. 3. 12. ~ 4. 1.)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

의견을 수렴하였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'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# 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제출되었으므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까지에”를 “까지의 규정에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약간 명”을 “몇 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없는 경우에는”을 “없을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5호 중 “레카차”를 “견인차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개시일”을 “시작일”로 한다.

제14조제5호 중 “교육훈련과 출동(동원)”을 “교육·훈련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상당”을 “상응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,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·도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시·군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·도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
- ⑤ 시·군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·군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
-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대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까지에</u> ----- -----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까지의 규정에</u> ----- -----.
제5조(조직) ① (생 략) ② ----- -- <u>약간 명</u> -----.	제5조(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 <u>몇 명</u> -----.
제7조(대장 등의 임무) ① (생 략) ② ----- ----- <u>없는 경우에는</u> -----.	제7조(대장 등의 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없을 때에는</u> -----.
제9조(대원의 임용) ① ~ ② (생 략) ③ ----- <u>대하여는</u> -----.	제9조(대원의 임용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.
제10조(임용기준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1. ~ 4. (생 략) 5. <u>레카차</u> ----- 6. ~ 7. (생 략) ③ (생 략)	제10조(임용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견인차</u> ----- 6. ~ 7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대장 등의 임기)	제11조(대장 등의 임기)

현행	개정안
<p>① (생략)</p> <p>② ----- <u>개시일</u> -----.</p> <p>제14조(해임사유)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과 출동(동원)에 불참한 경우</u></p> <p>6. ~ 7. (생략)</p> <p>제23조(출동수당) ① ----- ----- <u>범위 내에서</u> -----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26조(요양보상) ① (생략)</p> <p>② ----- <u>상당</u>-----.</p> <p>제31조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&lt;<u>신설</u>&gt;</p> <p>&lt;<u>신설</u>&gt;</p>	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시작일</u> -----.</p> <p>제14조(해임사유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<u>교육·훈련</u> -----</p> <p>6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3조(출동수당) ① -----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6조(요양보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상응</u>-----.</p> <p>제31조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시·도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시·군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·도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</u></p> <p>⑤ <u>시·군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·군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193 344 363 389">&lt;신설&gt;</p> <p data-bbox="193 495 395 539">④ (생략)</p>	<p data-bbox="826 293 1426 405">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대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p data-bbox="831 439 1241 483">⑦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

## 관 계 법 규

### □ 소방기본법

#### ○ 제7장 의용소방대

제37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시·읍·면에 의용소방대(義勇消防隊)를 둔다.

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, 그 설치·명칭·구역·조직·임면(任免)·정원·훈련·검열·복제·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(隊員)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]

제38조(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)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(非常勤)으로 한다.
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]

제39조(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)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·훈련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

②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]

제39조의2(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) ① 재난 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연합회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]

## 참 고 자 료

### □ 소방방재청 전국 시·도 의용소방대 조례 표준준칙(안)

- 소방방재청 : 방호조사과-2887(2012.5.23)

「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임기 관련 시·도 조례 표준안 시달」

### ○ 의용소방대연합회

(연합회 임원의 임기보장) ① 시·도 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시·군 연합회 회장 또는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·도 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

② 시·군 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·군 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